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1. 10. 18.

의안 번호	464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0. 1. 강남구청장(세무관리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0. 18.)
  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장원석)

가. 제안이유

○ 2022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에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○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○ 사업내용

-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

○ 출연예산 : 56,836천원

○ 산출기초

- 2020년도 보통세 473,633,969천원의 1만분의 1.2

다. 참고사항

○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특히 출연은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[1]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는 바 한국지방세연구원은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[2]에 따라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대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

---

1) **지방재정법**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**지방세기본법**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· 운영)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**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**을 설립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**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**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**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[시행일 : 2021. 1. 1.]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>

1. 1만분의 1.2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)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.3으로 한다.

고 판단됨.

- 2021년 출연금은 56,836천원으로 작년 53,541천원보다 증가한 것은 요율이 보통세의 1만분의 1.3⇒1.2로 낮아졌으나 보통세가 61,780,665천원 증가하여 출연금이 증가한 것임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가 2020.9.8. 개정되어 2021.1.1.부터 보통세의 1만분의 1.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. 끝.

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464

제출년월일 : 2021. 10. 1.
제 출 자 : 강남구청장
제 출 부 서 : 세무관리과

1. 제안이유

2022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에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출연금 내역

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연근거(사유) :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다. 사업내용
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

라. 출연예산 : 56,836천원

마. 산출기초

2020년도 보통세 473,633,969천원의 1만분의 1.2

※ 출연기준변경 (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994호, 2020.9.8.공포 및 2021.1.1 시행)

3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가.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

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(이하 생략)

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(중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나.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(중략)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(중략)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

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